

목 차

| |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4 |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4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5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5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6 |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6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6 |
| III. 경영참고사항 | 7 |
| 1. 사업의 개요..... | 7 |
| 가. 업계의 현황 | 7 |
| 나. 회사의 현황 | 8 |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9 |
|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 9 |
|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 51 |
|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 52 |
|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 53 |
|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53 |
|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54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3월 9일

회 사 명 : (주)삼호
대 표 이 사 : 추 문 석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전 화) 032-518-3535
(홈페이지) <http://www.samh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 우 성
(전 화) 02-2170-503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7년 3월 24일 (금)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도화동) 고려빌딩 (주)삼호 6층 교육실

3. 회의 목적

제1호 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 승인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후보 이종일

- 제3-2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구민상

- 제3-3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장영진

- 제3-4호 : 사외이사 후보 김준호

- 제3-5호 : 사외이사 후보 이성구

제4호 의안 : 감사선임 승인의 건

- 제4호 : 감사 후보 이헌주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서울사무소에 비치하고, 당사 정관 제20조에 따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의안 상세내역 : 'Ⅲ. 경영참고사항'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김준호(주1) (출석률: 100%) | 양기일 (출석률: 100%) |
| |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1차 | 2016.01.04. | e편한세상 대신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 해당없음 (신규선임) | 찬성 |
| 2차 | 2016.01.28. | 1호 : 2015년 결산 내부재무제표 승인 2호 : 제 59기 영업보고서 승인 3호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관련 건설 출 자자약정서 등 체결 승인 | | 찬성 찬성 찬성 |
| 3차 | 2016.02.23. | 1호 : 2016년 기본운영계획 승인 2호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시스템 운영에 관한 보고 | | 찬성 찬성 |
| 4차 | 2016.03.10. | 1호 : 대구범어 PF사업장 보증채무 처리 2호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제36차 유상증자 참여 | | 찬성 찬성 |
| 5차 | 2016.03.25.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결의 <내용> - 보고사항 : 제59기 감사보고, 영업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9기 재무제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 승인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 | 가결 |
| 6차 | 2016.03.25. | 대표이사 선임 | 찬성 | |
| 7차 | 2016.03.31. | 2016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
| 8차 | 2016.04.26. | 1호 : 2016년 1분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찬성 찬성 | |
| 9차 | 2016.06.07.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제37차 유상증자 참여 | 찬성 | |
| 10차 | 2016.06.22. | 대구범어 PF사업장 선순위 보증채무 처리 | 찬성 | |
| 11차 | 2016.06.30. | 2016년 3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
| 12차 | 2016.07.04. | 순천대 외 1교 생활관 BTL 금융약정 체결 | 찬성 | |
| 13차 | 2016.07.25. | 2016년 2분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 | 찬성 | |
| 14차 | 2016.09.09. | 1호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제38차 유상증자 참여 2호 : 하나은행 전자외상매출채권(B2B) 대출한도 증액 | 찬성 | |
| 15차 | 2016.09.30. | 2016년 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상품용역거래 | 찬성 | |

| | | | |
|-----|-------------|--|----------|
| | | 한도 승인의 건 | |
| 16차 | 2016.10.14. | 남서울 오토허브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대출약정 체결 | 찬성 |
| 17차 | 2016.10.26. | 2016년 3분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 | 찬성 |
| 18차 | 2016.10.31. | 부천동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관련 업무협약 | 찬성 |
| 19차 | 2016.11.01. | 부산 민락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권확보를 위한 사업비 대여 | 찬성 |
| 20차 | 2016.11.02. | 부산 민락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우선수익권 양도 및 사업비 대여 | 찬성 |
| 21차 | 2016.11.02. | 부산 민락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여금 관련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1호 : 본건 부동산 매입 관련 후순위 대여 2호 : 선순위 대출약정 관련 후순위 대여 | 찬성 찬성 |
| 22차 | 2016.12.14.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제39차 유상증자 참여 | 찬성 |
| 23차 | 2016.12.15. | PF사업장(광주태전, 춘천온의동, 횡성오크힐, 횡성샤모니) 보증채무 처리 | 찬성 |
| 24차 | 2016.12.27. | 1호 : 채권금융기관 차입금 일부상환 및 잔여차입금 만기연장 2호 : KEB 하나은행 제80회 사모사채 발행 | 찬성 찬성 |
| 25차 | 2016.12.28. | 2017년 1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 | 찬성 |

(주1) 위 김준호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당사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고 |
|------|-----|--------|------|---------------|----|
| 사외이사 | 1 | 800 | 32 | 32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4명의 보수한도 총액이며, 지급총액은 현재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보수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상기 비율은 2016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잠정 매출액(9,113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거래금액 및 반영된 매출액은 감사보고서 제출 전 실적을 참조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 비율(%) |
|--------------------|---------|----------------------------|------|-------|-------|
| 대림산업(주) | 상품·용역거래 | 2016.01.01 ~ 2016.12.31 | 매출 | 738 | 8.1 |
| | | | 매입 | 685 | 7.5 |
| | | | 계 | 1,423 | 15.6 |

※ 상기 비율은 2016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잠정 매출액(9,113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매출 매입금액은 공동도급 안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거래금액 및 기준이 된 잠정 매출액은 감사보고서 제출 전 실적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도로, 항만, 산업시설, 주택 건설 등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는 수주산업입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주로 옥외 현장을 이동하여 시공하며,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분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및 구조적 요인 등으로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국내경제와의 의존관계가 높은 건설산업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 및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건설업도 단순 시공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IT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부문은 미분양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의 변동과 경제성장의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4) 경쟁요소

건설산업 공사수주는 일정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들간의 제한경쟁이며 최저가 공사의 경우 가격경쟁력, 적격공사인 경우는 공사실적, 재무능력, 가격, 기술력, 신인도 등이 종합된 수행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는 업계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TK/대안 및 CM발주 등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발주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관리능력, 금융조달능력, 전략적 제휴 및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재 수급은 국내외 건설경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진행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나 자체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사업 분야 및 SOC 민간 투자는 금융권 및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산업은 특성상 타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률 및 규제의 신설·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분양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대책과 같은 정부차원의 규

제는 예전 대비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16년 당사는 신규현장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 증가한 9,113억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 절감 및 공사원가 절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921억원을 실현하는 등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회사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며, 세전이익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963억을 달성하여 흑자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부문에서는 일반건축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설계경쟁력 및 브랜드우위로 주택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GMP 및 민관공동사업의 수주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토목부문에서는 SOC예산 축소 및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등 더욱 어려워진 수주환경 속에서도 영업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 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주요제품 | 매출액 | 매출 비중 |
|----------|----------------|-------|-------|
| 건물 건설업 외 | 아파트, 물류, 호텔 등 | 7,399 | 81.2 |
| 토목 건설업 외 | 도로, 택지, 환경시설 등 | 1,714 | 18.8 |
| 합계 | | 9,113 | 100.0 |

※ 상기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 시공능력순위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 2016년 | | 2015년 | | 2014년 | |
|-----|-------------|----|-------------|----|-------------|----|
|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 토 건 | 10,326 | 27 | 8,824 | 31 | 6,204 | 46 |

주)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2016년도 시공능력 재평가 순위」 (2017. 1. 6.)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1970~80년대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국내 아파트문화를 선도해 온 주택의 명가로 주택사업 부문에서의 오랜 노하우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대주주인 대림산업(주)와 "e편한세상" 이라는 업계 최고수준 아파트 브랜드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주택구매수요 증가는 회사의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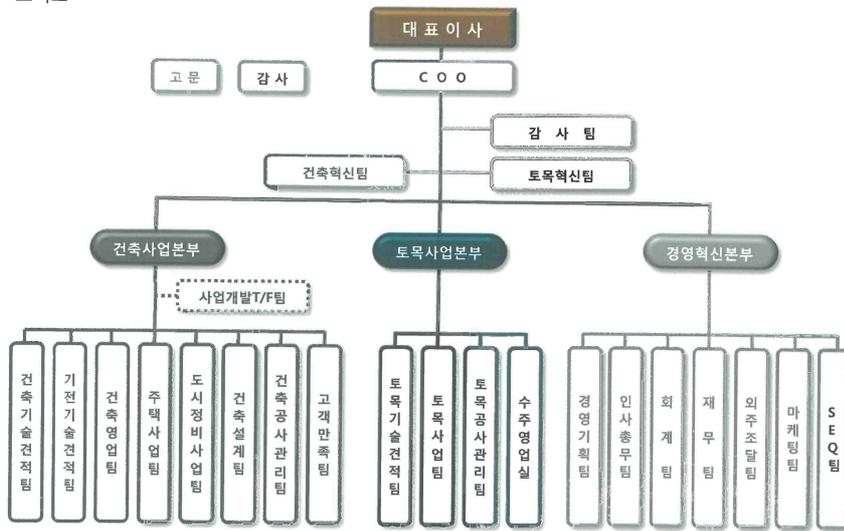
산업인 주택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이에 당사는 수익성을 고려한 수도권 및 지방 중심의 선별적 사업참여를 통해 회사의 내실 성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사업 및 실적보유분야에 편중되었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New Business 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결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에 앞장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16년 당사는 신규현장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 증가한 9,113억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 절감 및 공사원가 절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921억원을 실현하는 등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회사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며, 세전이익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963억을 달성하여 흑자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부문에서는 일반건축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설계경쟁력 및 브랜드우위로 주택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GMP 및 민관공동사업의 수주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토목부문에서는 SOC예산 축소 및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등 더욱 어려워진 수주환경 속에서도 영업 및 기술경

쟁력을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공공부문 발주감소,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간 수주 경쟁은 치열했고,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하도급 단가상승 등으로 원가경쟁력 유지도 어려웠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정세의 혼란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사업환경에 대비하여, 실적보유분야는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적 사업참여를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정교한 리스크 관리 가능성 및 회사의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수행 및 준공 단계까지 공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집행 원가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재 무 상 태 표

제 6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59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삼호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60(당)기말 | | 제59(전)기말 | |
|------------------|-----------------|-----------------|-----------------|-----------------|-----------------|
| 자산 | | | | | |
| I. 유동자산 | | | 627,586,079,883 | | 606,629,578,759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7,8,37 | 171,448,006,716 | | 183,584,801,818 | |
| 2. 단기금융상품 | 5,7,37 | 16,369,699,702 | | 69,132,751,551 |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10,35,37 | 297,340,433,645 | | 230,046,719,517 | |
| 4. 매도가능금융상품 | 7,9,37,38 | 1,106,989,573 | | 1,406,872,770 | |
| 5. 미청구공사 | 6 | 112,689,231,419 | | 100,377,484,614 | |
| 6. 재고자산 | 12 | 4,556,231,862 | | 4,869,191,205 | |
| 7. 기타유동자산 | 11,35 | 24,075,486,966 | | 17,211,757,284 | |
| II. 비유동자산 | | | 112,705,110,912 | | 100,194,451,775 |
|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10,35,37 | 23,243,878,894 | | 13,989,808,135 | |
| 2. 장기금융상품 | 5,7,37 | 2,595,000,000 | | 659,000,000 | |
| 3. 매도가능금융상품 | 7,9,26,35,37,38 | 35,584,671,854 | | 33,429,077,892 | |
| 4. 관계기업투자 | 16 | 425,138,140 | | 435,692,959 | |
| 5. 유형자산 | 13 | 1,913,103,713 | | 1,543,994,726 | |
| 6. 투자부동산 | 14 | 1,356,559,985 | | 786,584,390 | |
| 7. 무형자산 | 15 | 2,060,420,732 | | 1,202,575,341 | |
| 8. 이연법인세자산 | 34 | 45,526,337,594 | | 48,147,718,332 | |
| 자산총계 | | | 740,291,190,795 | | 706,824,030,534 |
| 부채 | | | | | |
| I. 유동부채 | | | 277,231,027,344 | | 455,182,985,278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17,35,37 | 181,193,423,700 | | 200,961,917,250 | |
| 2. 초과청구공사 | 6 | 50,999,777,087 | | 20,217,172,315 | |
|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7,19,37 | 31,525,310 | | 175,467,636,440 | |
| 4. 당기법인세부채 | | 10,923,767,692 | | 10,653,935,194 | |
| 5. 기타총당부채 | 22 | 5,707,689,792 | | 1,932,556,651 | |

| | | | | | |
|--------------|------------|-----------------|-----------------|----------------|-----------------|
| 6. 금융보증부채 | 7,21,26,37 | 17,076,000,000 | | 22,563,908,683 | |
| 7. 기타유동부채 | 18,35 | 11,298,843,763 | | 23,385,858,745 | |
| II. 비유동부채 | | | 204,695,616,517 | | 68,484,283,544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17 | 1,500,000,000 | | - | |
| 2. 차입금및사채 | 7,19,37 | 186,660,470,559 | | 733,220,209 | |
| 3. 순확정급여부채 | 20 | 1,038,236,469 | | 2,235,366,577 | |
| 4. 하자보수충당부채 | 6 | 14,024,746,679 | | 12,469,173,307 | |
| 5. 기타충당부채 | 22,27 | 858,618,166 | | 7,517,095,190 | |
| 6. 금융보증부채 | 7,21,26,37 | - | | 44,966,600,000 | |
| 7.기타비유동부채 | 18 | 613,544,644 | | 562,828,261 | |
| 부채총계 | | | 481,926,643,861 | | 523,667,268,822 |
| 자본 | | | | | |
| I. 자본금 | 23 | 75,898,830,000 | | 75,898,830,000 | |
| II. 기타불입자본 | 24 | 36,305,423,272 | | 36,305,423,272 | |
| III. 이익잉여금 | 25 | 143,153,397,231 | | 68,042,409,695 |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24 | 3,006,896,431 | | 2,910,098,745 | |
| 자본총계 | | | 258,364,546,934 | | 183,156,761,712 |
| 부채와자본총계 | | | 740,291,190,795 | | 706,824,030,534 |

손익계산서

제 6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5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호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60(당)기 | | 제59(전)기 | |
|----------------|-----------|----------------|-----------------|----------------|-----------------|
| I. 매출액 | 4,6,28,35 | | 911,291,114,674 | | 892,871,134,676 |
| II. 매출원가 | 28,29,35 | | 788,023,980,149 | | 776,398,132,997 |
| III. 매출총이익 | | | 123,267,134,525 | | 116,473,001,679 |
| 판매비와관리비 | 29,30,35 | 31,134,360,370 | | 26,737,794,927 | |
| IV. 영업이익 | | | 92,132,774,155 | | 89,735,206,752 |
| 금융수익 | 4,7,32 | 4,755,557,065 | | 2,640,982,834 | |
| 금융비용 | 4,7,32 | 5,769,089,960 | | 5,803,751,460 | |
| 지분법투자이익 | 4,16 | - | | 59,514,030 | |
| 지분법투자손실 | 4,16 | 10,838,538 | | - | |
| 기타영업외수익 | 4,33 | 20,156,473,062 | | 2,834,379,534 | |
| 기타영업외비용 | 4,33 | 14,980,244,937 | | 35,483,130,360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96,284,630,847 | | 53,983,201,330 |
| 법인세비용 | 4,34 | | 21,373,143,654 | | 13,922,652,259 |
| VI. 당기순이익 | | | 74,911,487,193 | | 40,060,549,071 |
| VII. 주당이익 | 31 | | | |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 | 4,935 | | 2,639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5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호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60(당기) | | 제59(전기) | |
|---------------------------------|-------|---------------|----------------|---------------|----------------|
| I. 당기순이익 | | | 74,911,487,193 | | 40,060,549,071 |
| II. 기타포괄손익 | | | 296,298,029 | | 704,645,679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96,797,686 | | 647,353,029 | |
|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 | 9,24 | 232,068,765 | | 936,522,503 | |
| 지분법자본변동 | 16,24 | 283,719 | | (102,949,198) | |
| 법인세효과 | 24,34 | (135,554,798) | | (186,220,276)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 199,500,343 | | 57,292,650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0 | 216,255,667 | | 73,773,693 | |
| 법인세효과 | 34 | (16,755,324) | | (16,481,043) |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 | 75,207,785,222 | | 40,765,194,750 |

자 본 변 동 표

제 6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5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호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총 계 |
|-----------------------|----------------|----------------|----------------|-------------|-----------------|---------------|-----------------|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 | |
| I. 2015. 1. 1.(전기초) | 75,898,830,000 | 14,812,000,000 | 21,495,278,272 | (1,855,000) | 27,924,567,974 | 2,262,745,716 | 142,391,566,962 |
| 1. 당기총포괄손익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40,060,549,071 | - | 40,060,549,071 |
|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 | - | - | - | - | - | 727,303,376 | 727,303,376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79,950,347) | (79,950,34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7,292,650 | - | 57,292,650 |
| II. 2015.12.31.(전기말) | 75,898,830,000 | 14,812,000,000 | 21,495,278,272 | (1,855,000) | 68,042,409,695 | 2,910,098,745 | 183,156,761,712 |
| III. 2016. 1. 1.(당기초) | 75,898,830,000 | 14,812,000,000 | 21,495,278,272 | (1,855,000) | 68,042,409,695 | 2,910,098,745 | 183,156,761,712 |
| 1. 당기총포괄손익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74,911,487,193 | - | 74,911,487,193 |
|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 | - | - | - | - | - | 90,696,495 | 90,696,495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6,101,191 | 6,101,19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99,500,343 | - | 199,500,343 |
| IV. 2016.12.31.(당기말) | 75,898,830,000 | 14,812,000,000 | 21,495,278,272 | (1,855,000) | 143,153,397,231 | 3,006,896,431 | 258,364,546,934 |

현금흐름표

제 6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5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호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60(당)기말 | | 59(전)기말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40,058,862,117 | | 87,684,119,646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 61,707,030,498 | | 99,168,461,065 | |
| 당기순손익 | | 74,911,487,193 | | 40,060,549,071 | |
| 조정 | 36 | 46,502,985,058 | | 60,108,300,232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36 | (59,707,441,753) | | (1,000,388,238) | |
| 2. 이자의 수취 | | 2,691,835,613 | | 2,491,965,564 | |
| 3. 이자의 지급 | | (5,805,792,154) | | (5,779,912,918) | |
| 4. 배당금의 수취 | | 100,028,700 | | 238,491,640 | |
| 5. 법인세의 납부 | | (18,634,240,540) | | (8,434,885,705)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22,504,131,909) | | (39,676,220,698)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124,185,496,768 | | 35,329,233,679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80,826,061,661 | | 8,434,010,078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41,964,465,107 | | 23,832,897,267 | |
|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처분 | | 1,394,970,000 | | 1,373,010,000 | |
| 관계기업투자의 감소(배당금) | | - | | 1,662,751,163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 | 26,565,171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146,689,628,677) | | (75,005,454,377)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28,063,009,812 | | 36,918,872,014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93,241,968,075 | | 35,031,874,343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1,936,000,000 | | 63,000,000 | |
|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취득 | | 3,352,921,000 | | 2,589,075,000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16,166,799,278 | | - | |
|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 542,584,540 | | 190,438,020 | |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 1,000,413,000 | | 212,195,000 | |
| 금융보증부채의 감소 | | 2,385,932,972 | |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29,691,525,310) | | (30,556,000,00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10,556,000,000 | | -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10,556,000,000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40,247,525,310) | | (30,556,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17,056,000,000 | | 10,556,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23,191,525,310 | | 10,580,000,000 | |
| 사채의 상환 | | - | | 9,420,000,000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I+II+III) | | | (12,136,795,102) | | 17,451,898,948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 | | 183,584,801,818 | | 166,132,902,870 |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 | | 171,448,006,716 | | 183,584,801,818 |

주석 참조

주석

제 60(당)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삼호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삼호(이하 "당사"라 함)는 토목과 건축공사 등을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17일자로 설립되었으며, 1986년 7월 30일자로 대림그룹에 편입되었고, 당기말 현재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7년 12월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수 차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75,899백만원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대림산업(주) | 6,346,821 | 41.81 |
| KB자산운용(주) | 1,759,588 | 11.59 |
| 기타 | 7,073,357 | 46.60 |
| 합 계 | 15,179,766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2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생산용 식물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TOCI), 당기손익-공정가치(FVTPL)로 측정하도록 분류하여야 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야 합니다('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

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로부터의 주요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의 표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다면 당기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을 반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접근법에서는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손상사건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기업은 항상 기대신용손실과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기대신용손실금액은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측정할 예정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요구되었던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파생상품계약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기준서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생략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분양공사의 진행기준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이견 등으로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기말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당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당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당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당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당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을 제 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약원가(기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 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세전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부담액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연 수 |
|--------|---------|
| 건물 | 40년 |
| 집기비품 외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 저장품은 선입선출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사용에 따른 가설재손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됩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보다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 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영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 또는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의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7)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1) 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계약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 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14,419백만원(전기말: 13,267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38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8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내용연수

주석 2.(9)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사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예상되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인세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이러한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기 재무제표 및 주석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심의가 진행 중이며, 감사가 완료된 감사보고서는 2017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2 조 (목적) 1.~70. (기재생략) 71.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 2 조 (목적) 1.~70. (기재생략) 71. 대부업 72.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 채권매입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 | |
|---|--|---|
| <p>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6. (생략)</p> <p>②~⑤ (기재생략)</p> | <p>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그 관련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6. (생략)</p> <p>②~⑤ (기재생략)</p> | <p>- 재무구조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에 대비하여 발행한도 및 대 상 확대</p> |
| <p>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6. (생략)</p> <p>②~⑤ (기재생략)</p> | <p>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그 관련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6. (생략)</p> <p>②~⑤ (기재생략)</p> | <p>- 재무구조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에 대비하여 발행한도 및 대 상 확대</p> |
| <p>제 30 조 (이사의 수)</p> <p>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 <p>제 30 조 (이사의 수)</p> <p>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 <p>- 이사회 효율성 제고</p> |
| <p>제 32 조 (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 <p>제 32 조 (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삭제)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 <p>- 사내/사외이사 최대임기 일치</p> |
| <p>부 칙</p> <p>1. (시행일) 이 정관은 제59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p> <p>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 <p>부 칙</p> <p>1. (시행일) 이 정관은 제60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p> <p>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 <p>- 시행일 변경</p>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종일 | 61.02.01. | 사내이사 | - | 이사회 |
| 구민상 | 68.02.02. | 기타비상무이사 | - | 이사회 |
| 장영진 | 62.05.26. | 기타비상무이사 | - | 이사회 |
| 김준호 | 54.11.09. | 사외이사 | - | 이사회 |
| 이성구 | 57.05.15. | 사외이사 | - | 이사회 |
| 총 (5) 명 | | | |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이종일 | (주)삼호 경영혁신본부장 | (주)삼호 경영혁신본부장 | - |
| 구민상 | 대림산업(주) 상무보 | 대림산업(주) 상무보 | - |
| 장영진 | 대림산업(주) 상무보 | 대림산업(주) 상무보 | - |
| 김준호 | (주)삼호 사외이사 | 하나은행 부행장 | - |
| 이성구 |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헌주 | 59.02.25. | - | 이사회 |
| 총 (1)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이헌주 | (주)삼호 감사 | 우리은행 본부장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제60기) | 당 기 (제61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4 (1) | 7 (2)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8억원 | 1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에 작성된 금액은 주총승인(예정) 최고 한도액입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제60기) | 당 기 (제61기) |
|---------------|------------|------------|
| 감사의 수 | 1 | 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2억원 | 2억원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에 작성된 금액은 주총승인(예정) 최고 한도액입니다.